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190호 2016. 7. 8(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9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8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2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7호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1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1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8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9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9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0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20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	25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보호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4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5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9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며 ,”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위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 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 연도”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필요하다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현안 등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문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를 “서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복리의 증진”을 “복리증진”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지방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1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등”을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제3조제2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제2의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 중 “증인등이”를 “증인 등이”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6조 중 “증인등”을 “증인 등”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2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
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지방자치
법」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관계공무
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제2조제4호 중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을 “인천광역시 서구의 소속 공무원 중”으로, “이상인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구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중”을 “기금 중”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여입할”을 “예

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중”을 “구성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회계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말일까지”를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4호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를 “위원의 일비 및 여비”로 한다.

제2조 중 “각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로, “법령·조례 또는 규칙”을 “법령 및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비등)”을 “(일비)”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소속공무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4조제2호 중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를 “그 밖의 위원 : 4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5호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법규”라 함은 구”를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법”이라 함은”을

““입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법예고”라 함은”을 ““입법예고”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관리 하는”를 “관리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입법예고시”를 “입법예고 시”로 한다.

제10조 중 “다른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며, 소속공무원”을 “임명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과”를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

단)”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를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제5호 중 “관련행사시”를 “관련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하는 자”를 “준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3조제2항제4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기만료전”을 “임기만료 전”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내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

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조에 따라”로,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을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내습시”를 “내습 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인전”을 “승인 전”으로, “건축행위”를 “건축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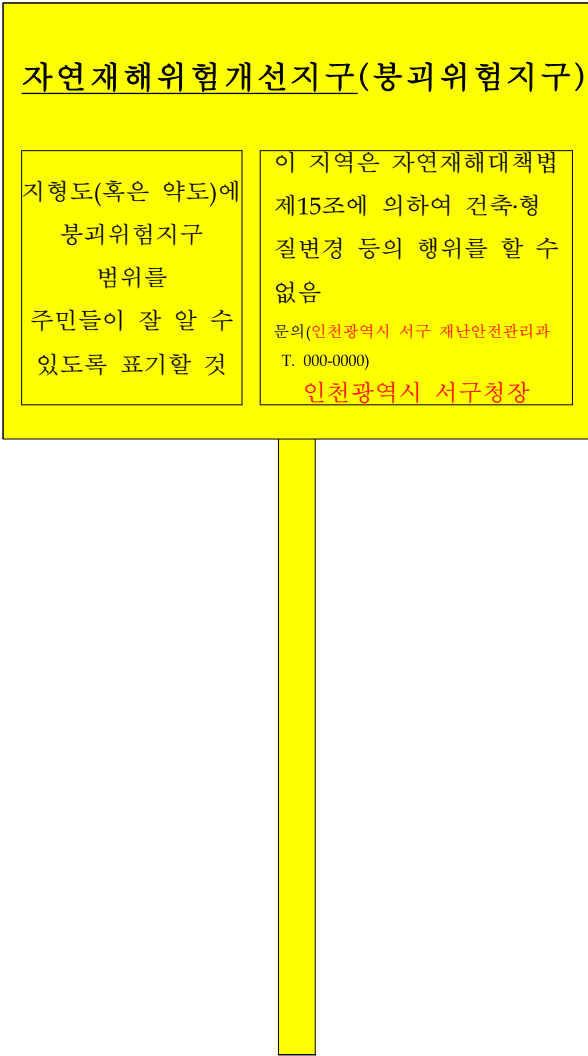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 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 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 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 기 문자로 태풍루사, 20 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 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 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구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4. 특화거리 조성사업
5.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 설치사업

제8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

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시설
5. 제7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경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계절썰매장시설(이하 “썰매장시설”이라 한다)”를 “사계절썰
매장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시설(이하 “썰매장시설”이라 한다)”
이란 별표 1의 시설과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만3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단체인솔자에 의해 3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보일 때는”를 “보일 때는”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용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만65세 이상인 노인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원봉사자로서”를 “자원봉사자로서”로,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신부(단, 1~5개월의 임신부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만 면제할 수 있다.)

9. 만3세 미만의 유아 단, 단체입장의 경우는 제외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2할을 감면”을 “20퍼센트를 감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체등에서 평일(국공휴일·주말 제외) 20명”을 “기업체 등에서 30명”으로, “이용시 사용료의 3할을”을 “이용 시 사용료의 2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간 중”을 “기간 중”으로, “3할 범위안”을 “30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구 주민 4명 가족이(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 입장 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제5호 중 “의한 참전유공자”를 “따른 참전유공자”로,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5할을 감면”을 “50퍼센트를 감면”로 한다.

제7조 중 “2이상”을 “두 개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일”을 “그날”로 한다.

제12조 중 “망실 등으로”을 “잃어버리는 등으로”으로, “발생케”를 “발생하게”로, “원상회복 하거나”를 “원상회복하거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공무원”을 “관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을 “제1항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시설이용 제한)

제14조제1항제2호 중 “4세”를 “만3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익허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를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허가·위탁를 받은자는”을 “제1항에 따라 수익허가·위탁를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셀매장시설의 위치와 종류

위 치	종 류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66(공촌동)	○ 사계절셀매장 ○ 야외풀장 ○ 관리동(휴게실등) ○ 스낵하우스 ○ 야외휴게실	

[별표 2]

사 용 료

시설명	기 준	요 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금	비 고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포함)	어 른	6,000원	3,500원	1회 입장 기 준
	청소년	4,000원	2,500원	
	어린이	4,000원	2,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으로, “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협회등”을 “협회 등”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를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품·용역등”을 “물품·용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을 “심의를 효율적”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를 각각 “해당 분야”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를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로 하고,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해당 심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을 “제2항에 의한 심의”로 한다.

제11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를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기 만료전 이라도 당해”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 또는 자문으로”을 “심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관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원	
	여 비	20,000원	출장 시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 1 절 총 칙”을 “제1절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물품출납원(분인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를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의”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 2 절 출 납”을 “제2절 출납”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4조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최초 등재후”를 “최초 등재 후”로, “추정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를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을 “제16조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의 규정”을 “각 호”로,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를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을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 3 절 보 관”을 “제3절 보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제1항에 따른 장부 중”으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이 규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 5 절 검사 및 인계”를 “제5절 검사 및 인계”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공무

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를 “구청장 또는 직속 기관, 출장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를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날로부터 30일이내”를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 년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같은 항 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
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4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

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구의원과 보건의료·사회복지·건축·공공디자인·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기준(제5조와 관련)

구분	디자인 기준
매일 사용하는 계단 지정	매일 상시 이용하는 계단 계획(최소 1개 이상) 승강기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내 가장 많이 보행하는 통로와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
계단 위치 및 가시성	건물입구에서 접근 용이하게 가깝게 설치 승강기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설치 건강활동 내용이 있고 심미적인 계단 공간 창출 계단이 보이는 실내 환경과 계단실은 유리칸막이 또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계단크기	단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다양한 연령이 보행 가능한 계단 경사도 계획
심미적인 계단 환경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계단 구성 계단바닥과 벽면은 심미적인 마감재 사용 창문, 음악, 밝은 색, 자연환기 등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계단 환경 창출 조명이 잘 이루어진 계단 환경 계획 유지·관리가 쉽고 안전한 계단 공간 계획
계단 우선 사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계단 사용 권장하는 도안 및 포스터 부착(건강정보, 경고성 메시지 등)
건기 좋은 보행 경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성 보행경로에 자연광이 비추도록 계획 보행경로에 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도보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함 건물 안과 건물 주변의 보행경로 정보 제공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계단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승강기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강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 건물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 승강기 사용 층수 제한 에스컬레이터 사용시간 제한
건물 계획	간단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계단, 경사로로 접근 가능한 로비를 2층에 계획 계단, 경사로 주변에 공용 휴게 공간 계획 사람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운동 장려하는 건축시설	건물 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운동공간 계획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운동공간 계획 운동공간에서 외부 모습이 보이도록 계획 건물 내 목욕실, 보관함 제공 안전한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지하실)
건물외관 및 형태	운동공간, 운동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설치 건물 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 계획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다양성을 가미 시킨 저층부(1~2층) 외관 계획 건물 주변의 공원, 열린 공간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 계획 캐노피, 경량 차양 등을 건물 외관에 설치하여 건물 외부 둘레길 계획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만,5급”을 “다만, 5급”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세금관련”을 “세금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 중 “흠결있는”을 “흠결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동항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을 “같은 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사상”을 “인사 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서류사본”을 “서류 사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권시정요구대상”을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정 불가대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심사청구결정례”를 “심사청구 결정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유없다고”를 “이유가 없다고”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직권시정요구대상”을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정불가대상”을 “시정 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급이상 소속공무원”을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세무관련학과의”를 “그 밖의 세무 관련 학과에”로, “재직하는 자,”를 “재직하는 사람,”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자 4

인”을 “사람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호의 자를”을 “제2호의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유있다고”를 각각 “이유가 있다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유없다고”를 “이유가 없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동조제6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기새로운”을 “투기·새로운”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교육자료등”을 “교육자료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세기본

법」 제105조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구 청 장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 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 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자	담 당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장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의 견 및 처 리 내 용				
첨부 : 결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세무부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

【별지 제6호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자	납세자보호 관	구 청 장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 무 과 의 건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 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

【별지 제7호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 담 요 지				
상 담 자 성 명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

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라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업무”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로, “(자료 정리·타자등)”을 “(자료정리·타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제3조제1항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를 “제1항 제5호의”로, “실·국·과등”을 “실·국·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직책 또는 업무중”을 “직책 또는 업무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기관에 2이상”을 “해당 기관에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7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비등”을 “미비 등”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을 “가입절차 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한때”를 “제출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협의회”를 “해당 협의회”로, “10명 이내”를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할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을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월이내”를 “3개월 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회원명부등”을 “회원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관련공무원”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1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규정등”을 “협의회규정 등”으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근무시간중”을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7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
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가”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본청”을 “구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규정에 따라”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
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헌장 제정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헌장 제정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정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을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헌장제정 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이행중”을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이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분야”를 “소관 분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비스이행기준”을 “서비스 이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민불만접수처리대장”을 “구민불만 접수 처리대장”으로, “결재후”를 “결재를 얻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헌장제정 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민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정제정부서별”을 “구

민불만 접수 처리대장은 헌장제정부서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불편사항”을 “구민불편사항”으로, “헌장 제정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4항 중 “헌장제정 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헌장 제정부서”를 “헌장제정부서”로 한다.

제17조 중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를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 (이하 “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중 “관내에 90일 이상”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관내”를 “구에”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를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제4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해당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

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 에 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내”를 “구에”로 하고, “5월 21일“세계인의 날”로부터”를 “5월 20일 “세계인의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내”를 “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의 규정에”를 “「인천광 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로 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규정에 의거”를 “「인천 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관 지정)”을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를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을 “징수절차”로, “「인천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할 경우

제14조제1항 중 “7명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_{호선}한다.

제17조제5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할 지방법원장”을 “인천지방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을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을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법 규정에 의거”를 “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

제6조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준공시”를 “준공 시”로 한다.

제7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이 조례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호서식”을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8조의2”를 “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

용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까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구소속 공무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
한 자”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해당 지역사회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을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2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서구”를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학교급식법」 제4

2016. 07. 08.()

조에 의한”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으로,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해당학교”를 “해당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국장 및 관할교육청 관련국장”을 “서구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0조 중 “사항은·규칙”을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민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예·체·기능”을 “예술·체육·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의거 소속공무원”을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를 “관계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구의 회 의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소속하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 제2호”를 “「도서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도별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제5조제4호 본문 중 “규모로 하여야 한다”를 “규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하고,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계분야”를 “관계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남은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를 “조례의 시행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를 “등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로,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날짜로 계산으로 반환할 수 있다”를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 어린이”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2번길 18(마전동)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37번길 6-12(석남동)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심곡동)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다.”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연법 제2조에 의한”을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허가일로부터”를 각각 “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를 “한 번만 10일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0퍼센트을”을 “5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영장입장료를 사용예정일까지”를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로 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헬스장 입장료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제10조제4호(중건의 제3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변상책임)”을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6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2층	9,000	
		3층	6,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대/1회	20,000	
음향	마이크 (설비포함)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W/L (설비포함)	1일 1개	20,000	
	PIN (설비포함)	1일 1개	30,000	
	MR (AR, BGM)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1 시간	20,000	
공 바 톤		1일 1개	10,000	

3. 냉 · 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 · 난방 사용료	대강당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세미나실	1시간	(전기포함) 시가에 1	
	체육관	1시간	0%를 가산한 금액	

4. 교육수강료

○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u>52,000</u>	<u>44,000</u>	<u>38,000</u>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u>5,000</u>	<u>3,000</u>	<u>2,000</u>	
		단체	<u>4,000</u>	<u>2,500</u>	<u>1,500</u>	
헬스	월이용	개인	30,000	20,000		
	1일이용	개인	<u>4,000</u>	<u>2,000</u>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수”를 “지원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구 문화복지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6조 중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을 “소속 공무원 및 문화원”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2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단”을 “각 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고”로, “기타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관계전문인사중”을 “그 밖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과 관계 전문인사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촉시”를 “위촉 시”로, “평정등”을 “평정 등”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제7조 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풍부한자로”를 “풍부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예술 감독의 추천서”를 “예술감독의 추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구에”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서구에”를 “구에”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의결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직”을 “그 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라”로, 같은 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연시”를 “공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이내의 범위내”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를 “10퍼센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위원장 및 구의원”을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중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예산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 공무원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경계상”을 “경계 상”으로 한다.

제6조 중 “구, 동의 소속공무원”을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연장”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로 한다.

제8조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8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2조 중 “50 (경서동 737-3, 737-11번지)”를 “50”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손해배상)”을 “(손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7호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사”로, “연구등”을 “연구 등”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기중”을 “임기 중”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등”을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스스로”를 “위원 스스로”로, “품위손상 등”을 “품위손상 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지조사등”을 “현지조사 등”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캠페인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실내게이트볼장(이하“게이트볼장”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하는자를말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이트볼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이하 “게이트볼장”이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게이트볼연합회(이하“시 게이트볼연합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게이트볼연합회(이하“구 게이트볼연합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배드민턴연합회(이하 “구 배드민턴연합회”라 한다) 회원

제3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생활체육”을 “한다) 생활체육”으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일전”을 “1일 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확인된 자”를 “확인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② 사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

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 규정에”를 “제10조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10조 중 “유치하기위해”를 “유치하기 위해”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기준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및 서구체육회·서구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가맹경기단체 인사, 서구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조례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2인이상”을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체육인사 1인, 경제계 인사 2인 및 관내학교장 2인”을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있을시”를 “있는 경우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각각 “「도로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녹게하는”을 “녹게 하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관리자간”을 “건축물관리자 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첨1”을 “예시도는 별첨”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때로부터”를 “때부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일몰후 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로, “완료하여야 한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의 제목 “[별첨1]”을 “[별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3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라 함을”을 ““도로”란”으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 원 이하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 징수”를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4호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점용료등은”을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으로, “당해 연도별”을 “해당 연도별”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으로, “당해연도 3월내”를 “해당 연도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이상 이거나, 기타”를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로,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점용허가시”를 “점용허가 시”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에 의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6호에 따라”로,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를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을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용수 연액 m ³ /sec당 200,000원 나. 농업용수 0.05m ³ ~0.5m ³ /sec까지 연액 10,000원, 0.5m ³ /sec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	산 정 기 준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영 제2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기타”를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를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을 “활성화계획을”로, “관할경찰서장”을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으로, “정비계획을”을 “활성화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제7조

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

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④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한 개 층 이하로써 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사업부서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전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

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를 따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제21조제1항 관련)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법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3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95㎡ 이하인 주택
- 나.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2. 수변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4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 나. 4층 이하로서 연면적 495㎡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3. 시가지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5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 나. 5층 이하로서 연면적 660㎡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별표 2]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1조제2항제1호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주택
2.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별표 3]

경관심의 대상인 공공건축물(제21조제2항제2호 관련)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시설)
3.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4. 환경관리시설(자원순환시설, 환경미화원대기소, 공중화장실)
5. 그 밖의 시설(발전시설, 주차시설 등 1호부터 4호까지 용도 이외의 공공시설)
6.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및 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별표 4]

경관심의 대상인 일반건축물(제21조제2항제3호 관련)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연속되는 폭 25m 이상 도로에 연속으로 10m 이상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5]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제23조제1항제4호 관련)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단,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1.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다. 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 가. 특화가로 조성사업
 - 나.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한 시설물 설치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한다)제5조의2”를 “한다)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제1항제1호의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제12조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자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서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m²]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6조제1항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원이”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하고, “해촉될 수 있다.”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당연도”을 “해당 연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80일 전까지”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정한기간”을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도시관리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시개발과장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4. 지출원 : 도시행정담당
5.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담당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을때”를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대리인선정신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 역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번지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 m²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음·진동규제법』”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에 제1호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를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21조의”로, “별표8”을 “별표 9”로,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를 “오전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를 “제21조의”로, “2개이상”을 “2개 이상”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행위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를 “행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

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위하는자”를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를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규정”을 “제6조”로,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관리”를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소변기”를 “대·소변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파손?훼손”을 “파손·훼손”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0조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같은 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기준”을 “제6조 및 별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있는 날로부터”를 “있는 날부터”로, “적용일로부터 15일전”을 “적용일부터 15일 전”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50	70	10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30	40	5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설치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7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제3조제2항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주차요금외”를 “주차요금 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800cc이하”를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으로, “2시간이내”를 “2시간 이내”로, “다음연도”를 “다

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6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차장안”을 “주차장 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에 의한다”를 “별표 4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위치등”을 “설치위치 등”으로, “별표 6에 의한다”를 “별표 6을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상 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외”를 “자동차 외”로 한다.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설치시”를 “설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밖의”를 “밖에”로,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은일수”를 “남은 일수”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총면적중”을 “총면적 중”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을 “표준규격은”으로 한다.

“제 3 장 부설주차장”을 “제3장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관활동”을 “관할 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예산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 및 상환조건등”을 “방법 및 상환조건 등”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 중 “구금고 또는 기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1에”를 각각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발급일로”를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를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로,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여”를 “발급하여”로 한다.

제23조의2 중 “것외”를 “것 외”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8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 09:00부터 19:00까지
 - 나. 야간 :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 1구획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라.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별표 8]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19조제1항 관련)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6호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을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제2조제5호 중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용도이외”를 “각 호의 용도 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회계연도내”를 “해당 회계연도 내”로 한다.

제5조 중 “다음년도”을 “다음 연도”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오류동 2블럭 1롯트 검단일반산업단지”를 “마중1로 12”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이사전원”을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계법령 및 조례”를 “관계 법령 및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60%”를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 범위 내”를 “30퍼센트 범위”로, “생산공정상”을 “생산공정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을 “관련 법규 및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서류”를 “그 밖의 서류”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구관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제3조제3항제4호 중 “서구청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있는자 2인이내”를 “있는 공무원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구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으로,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

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을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사업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를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갱신할 때마다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3(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4(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의결

제3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강의실등”을 “강의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운영기간중 수탁받은”을 “운영기간 중 수탁한”으로, “책임있는”을 “책임 있는”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한다.”를 “함(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만료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시에는 2월”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품등”을 “비품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련법규”을 “관련 법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 (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 (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노인복지법」”으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를 ““노인학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구청장”을 “구청장”이라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6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중 “최신정보”를 “최신 정보”로 한다.

제13조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능력적성”을 “능력과 적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2016. 07. 08.()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시”를 “만료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번까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장사항 심의”를 “연장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탁자는 제3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는 기간만료”를 “기간만료”으로, “서면”을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같은 항 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월 말”을 “8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형세출”을 “세입·세출”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

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가정관련”을 “가정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에”을 “그 밖에”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을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7조제1항 중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를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적 외”를 “목적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구아동급식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3조제3항 중 “아동담당국장 및 아동담당과장”을 “아동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관계공무원 ”를 “관계 공무원”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북부고용센터”를 “인천서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과반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로,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 및 지역사회내”를 “가정 및 지역사회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8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센터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각각 “과반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2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계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친화도시 구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제15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논의한다.

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④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도시담당**이 된다.

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1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부서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같은 목 중 “줄것”을 “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로 하며, “조정 할”을 “조정할”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없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를 “없는 경우에는 제4조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역내”를 “구역”으로,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역 내에서”를 “구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구는”을 “구청장은”으로, “경찰관서”를 “경찰서”로, “해당구

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관련법규”를 “관련 법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1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이하 “별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의”를 “별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심의

제8조제2항제3호가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인천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찰서”를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로, 제8조제2항제3호제다목 중 “지방노동관서”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으로, “고용지원센터”를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같은 조 제8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구청장 또는 수탁자”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육성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중에서”

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육성등에”를 “육성 등에”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각호의”를 “각 호 의”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관련업무에”를 “관련 업무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에 회부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 기관소속”을 “해당 기관 소속”으로 하고,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 중 “용어의 뜻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용어의 뜻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5조 중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8호”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7조제2항 중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업무수탁자 또는 대행자”를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변상(이하 “업무위탁대행경비”라 한다)을”을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4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운영에 관 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3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질병 기타의”를 “질병 및 그 밖의”로,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것외”를 “것 외”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5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금계정)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이 기금”을 “기금”으로,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당해”를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로, “수익 및 기타”를 “수익 및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이 회계”를 “회계”로,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경리관·징수관”을 “재무관·징수관”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일 및 장소등”을 “기일 및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대불금을”을 “대지급금을”로, “대불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를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6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해당직”을 “해당 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2(위원의 위촉해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이상의 소집요청”을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를 “회의 때마다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유소

7. 의료기관, 어린이집,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흡연구역의 지정)”을 “(흡연구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흡연구역을 지정”을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를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에”를 “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회장 회원중”을 “부회장은 회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를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회원의 임기 및 해촉)”을 “(회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를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해촉 할 수”을 “위촉을 해제할 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7조 중 “개최”를 “개 의(開議)”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것외”를 “것 외”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제3조제7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탁자는 치매센터”를 “치매센터”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의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자는 운영비”를 “운영비”로, “재위탁할 수 없다.”를 “재위탁 불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을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지시사항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는 치매센터”를 “치매센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탁자는 치매센터”를 “치매센터”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를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위탁운영기간”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을 “구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의회 의장이”를 “서구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5. 자활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6. 지역자활센터의 장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개최일로부터 3일전”을 “개최일부터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담당자 및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노사정”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노사정은”을 “근로자와 사용자 및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자중에서”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사정 담당국장

5. 인천서구고용플러스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제1호를 1. 관계 당사자와 공무원,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제9조 제2호를 2. 관계 당사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
전”을 “10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로 “소속하에 둔다.”를 “소속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20인”을 “1명과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참석시킬수”를 “참석시킬 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연임할수”를 “연임할 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사망, 질병”을 “질병”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을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구소속직원”을 “구 소속 직원”으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5호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규정에 따
라”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인천광역시서
구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을 “법 제13조”로, “제2조 규정이 정하는”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회계관련”을 “회계 관련”으로,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6호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유
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
물”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를 ““유기·유실동
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
에서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도로·공원 등이 공
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
진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물보호””를 ““보호조치””로,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를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물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함은 구청장이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유실동물”로, “유기동물보호”를 “유기·유실동물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유기동물”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유실동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유실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7일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보호소”를 “보호센터”로,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날로부터 1월”을 “날부터 10일”로, “당해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한다”를 “해당 법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동물의”를 각각 “유기·유실동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을 “제2항에 따라 유기·유실동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기·유실동물 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1. 사료급여 기준(1마리/1일)

동물명	체중(Kg)	사료급여량(g)
개	1 ~ 3	전용사료 40 ~ 90 또는 통조림 120 ~ 180
	4 ~ 7	전용사료 100 ~ 170 또는 통조림 180 ~ 630
	8 ~ 10	전용사료 170 ~ 220 또는 통조림 630 ~ 670
	10 ~ 20	전용사료 220 ~ 360 또는 통조림 670 ~ 1,110
	20 ~ 30	전용사료 360 ~ 480 또는 통조림 1,110 ~ 1,470
	30 ~ 40	전용사료 480 ~ 600 또는 통조림 1,470 ~ 1,820
	40 이상	전용사료 600 ~ 700 또는 통조림 1,820 ~ 2,200
고양이	1 ~ 2	전용사료 25 ~ 50 또는 통조림 75 ~ 150
	3 ~ 4	전용사료 75 ~ 100 또는 통조림 225 ~ 300
	5 이상	전용사료 120 ~ 140 또는 통조림 360 ~ 420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소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산출기준

① 보호인 수당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 이내

② 포획인부의 노임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③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중급제품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기타 비용

가. 안락사처리비: 안락사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다.

다. 치료비: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동물병원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 경비에 대하여는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기준(1마리/1일)

동 물 명	체 중(kg)	청 구 내 역				
		전용사료		보호인 수당 (1인/1일)	포획인부 수당 (회/1인)	합 계
		양(g)	금액(원)			
개	1 ~ 3	40	260	6,000	50,420	56,680
	4 ~ 7	100	660	7,000	50,420	58,080
	8 ~ 10	170	1,120	8,000	50,420	59,540
	10 ~ 20	220	1,450	9,000	50,420	60,870
	20 ~ 30	360	2,370	10,000	50,420	62,790
	30 ~ 40	480	3,160	11,000	50,420	64,580
	40 이상	600	3,960	12,600	50,420	66,980
고양이	1 ~ 2	25	160	5,000	50,420	55,580
	3 ~ 4	75	490	6,000	50,420	56,910
	5 이상	120	790	7,000	50,420	58,210

※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는 사료량,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타 비용은 소요된 실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4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
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